

May 2, 2023

##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관련

금융위원회는 2022. 12. 16.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‘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’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.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「금융투자업규정」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, 2023. 7. 1.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### I. 주관회사의 청약자에 대한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 및 확인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

- 1) 「금융투자업규정」 및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으로 2023. 7. 1.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, 주관회사는 아래의 표준방법과 대체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함. 이를 위반할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.

증권의 인수업무규정 제5조의 3 제1항 ~ 제3항 및 제6항의 주요내용
<p>① (표준방법)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고유재산은 자기자본,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(계좌)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*을 확인</p> <p>* 예) A운용사가 10개 공모펀드에 대해 하나의 계좌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, 10개 펀드의 총자산의 합계액을 의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경우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(자료 부재시 전전 분기말) 개별 재무제표상 금액으로,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(설립일부터 3개월 미경과시 운용기간) 일 평잔으로 함</li> <li>-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동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(외사 국내지점은 지점장) 또는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받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,</li> <li>-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</li> </ul> <p>② (대체방법) 주관회사의 대표이사(외사 국내지점은 지점장) 또는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으로 마련한 내부규정·지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</p>

- 2)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,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배정을 해서는 안됨.

### II.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

- 1)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2를 개정하여, 의무보유확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.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응하는 경우를 “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”로 규율하여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.

